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방지와 플랫폼의 공적 책임 - 'N번방 방지법' 합헌 결정의 법리적 고찰

정지웅 법률사무소 조 대표변호사

【대상판례】

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2021헌마152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제1항 등 위헌확인]

1. 들어가며: 디지털 시대의 인격권과 새로운 법적 안전망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N번방 사건'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잔혹하게 훼손할 수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물은 한 번 유포되는 순간 무한 복제와 초고속 전파를 통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실시간으로 침해하는, 전통적 매체와는 질적으로 다른 파괴력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입법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를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시행 직후부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성 침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침해,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법재판소 2025. 10. 23. 선고 2021헌마290, 1521(병합)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디지털 플랫폼이 더 이상 '중립적 통로'에 머무를 수 없으며, 디지털 영토의 관리자로서 공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배경 및 경과

청구인들은 SNS·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개인,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전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상시 감시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특히 정보 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한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을 지적하면서, 이 조항을 '인터넷 검열·감시법'이라 비판하였다.

현재는 2025년 10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2항에 대한 위헌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문제 조항이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사전조치 의무와 이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은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실제

심판대상이 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30조의6 및 관련 고시에 구체화되어 있으며, 크게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신고·삭제 요청 기능 마련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 창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요청을 처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2. 검색어·제목 연계 필터링 신고·차단된 불법촬영물 등의 제목·주소 정보와 이용자 검색어 등을 대조하여, 동일·유사 정보가 검색 결과로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한다.
3. 특징값(해시값) 대조에 의한 업로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불법

촬영물로 확정된 정보의 특징값(일종의 ‘디지털 DNA’)과 이용자가 새로 업로드하려는 정보의 특징값을 기계적으로 대조하여,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촬영물이 재게시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한다.

4. 사전 고지 의무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와 아울러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규정한다.

3. 법리적 쟁점: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의 한계

가. 명확성 원칙과 ‘성적 욕망·수치심’ 개념

청구인들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떤 정보가 규제 대상인지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유사한 개념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점과 기존 판례에서 형성된 해석 기준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는 해당 개념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기준으로, 가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의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표현은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기존 형사법 영역에서 형성된 해석들과 결합될 때 규제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개념 탄력성을 허용해 온 현재의 종전 입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나.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기술의 가변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현재는 기본적 사항은 법률이 정하고,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유통 수법의 지능화를 고려하였다.

현재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라는 규율 목적과 대상,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의 성격과 내용은 이미 법률 조항 자체에서 상당 부분 특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술

적 조치의 구체적 방식과 표준은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입법부가 고정된 문언으로 사전에 일일이 규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부가 전문성과 탄력성을 바탕으로 시행령·고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은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술의 가변성을 수용하기 위한 합리적 위임으로 평가되었다.

4. 사전검열 금지와 일반적 감시의무 논의

가. 기계적 특징값 대조와 인간적 내용 심사의 구분

이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적 쟁점은, 특징값 대조와 검색 제한 등 기술적 조치가 헌법상 금지된 사전검열이나 정보매개자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현재는 먼저 이 조치들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이용자 개별 콘텐츠의 사전적·선택적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게시·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보았다.

특징값(해시값) 대조는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정된 정보의 디지털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업로드되는 정보의 지문과 기계적으로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알고리즘 처리에 불과하며, 행정기관이 개별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가치를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검열'과는 구별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필터링은 사업자가 사적 자율에 따라 수행하는 조치로서, 행정기관이 직접 사전 심사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사전검열 부정의 근거가 되었다.

나. 비공개 영역과 공개 영역의 경계 설정

청구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이 결과적으로 1:1 대화나 폐쇄형 채팅방까지 감시·차단 대상으로 삼게 되어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와 정부는 이 조치의 적용 범위를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해석하면서, 불특정 다수가 검색·열람할 수 있는 공개 공간에서의 불법촬영물 전파를 막는 것이 핵심 목적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 간 비공개 통신 내용이 기계적으로 분석·감시되는 위험은 현행 제도의 구조상 크지 않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 혹은 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반폐쇄형 커뮤니티와 같이 공개성과 사적 영역이 교차하는 회색 지대에서는 향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플랫폼 구조가 계속 진화하는 상황에서, 공개성과 폐쇄성의 법적 기

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5. 과잉금지원칙과 플랫폼의 공적 관리 책임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현재는 먼저 디지털 성범죄물의 전파가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게 침해하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성 인식을 왜곡하고 2차·3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입법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수단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현재는,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없을 경우 사후 신고·삭제만으로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징 값 대조, 검색 제한, 신고 시스템 구축 등은 불법촬영물의 재유포를 물리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입법 목적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되었다.

나.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 사전조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을 부가통신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전가하며, 정상적인 콘텐츠까지 삭제·차단되는 ‘과차단’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현재는, 순수한 사후조치만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고, 한 번 유포된 불법촬영물이 사실상 ‘영구적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정한 사전조치는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았다.

또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에게만 부과되고, 이용자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험에 관한 사전 고지 정도의 제한만이 가해진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현재는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광범위성을 감안할 때, 사업자와 이용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보았다.



6. 국제적 흐름과 디지털 서비스의 책임성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에 대한 이번 합헌 결정은, 플랫폼을 단순한 ‘정보의 통로’가 아닌 디지털 공론장의 관리자로 파악하는 국제적 규제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은 2017년부터 대형 소셜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불만 제기 시스템 구축, 위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차단, 책임자 지정,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플랫폼의 삭제·차단 책임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후 EU 차원에서 제정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 신고·처리 절차, 플랫폼의 삭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피해 구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에 대한 위험평가와 알고리즘 투명성 의무, 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 보다 포괄적인 책임 규범을 마련하였다. 한편 NetzDG가 ‘플랫폼의 자의적 과잉삭제’를 유발했다는 비판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DSA가 내부 이의제기 절차와 이용자 구제 메커니즘을 강화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이번 결정은 한국에서도 플랫폼을 ‘중립적 인프라’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를 예방할 책임을 지는 공적 행위자로 본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법제 역시 단순 삭제·차단 의무를 넘어,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내부 이의제기 절차 등 DSA 수준의 포괄적 책임 구조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7.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과제

가. 인격권 보호의 새로운 기준

이번 합헌 결정은 전통적인 언론·출판 매체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상 여론 형성과 정보 유통의 중심이 된 현실을 반영하여, 온라인 인격권 보호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언론중재법적 함의가 크다. 현재는 디지털 공간에서 인격권 보호가 표현의 자유 보호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릴 수 없으며, 특히 성적 인격권 침해의 경우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향후 언론중재위원회가 포털·SNS·동영상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성적 모욕, 사생활 침해 분쟁을 다룰 때 중요한 헌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반복적·조직적인 온라인 성희롱·성적 모욕 표현, 검색·추천 알고리즘이 특정인의 인격권 침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등에서, 플랫폼의 관리·통제 가능성과 책임 범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여지를 넓혀 주는 것이다.

나. 기술적 완결성과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

한편 현재의 합헌 결정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모든 위험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필터링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콘텐츠가 불법촬영물로 오인되어 차단되는 ‘과차단’ 문제는 여전히 표현의 자유 위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해시값 대조 방식은 동일 파일의 재리포는 막지만, 미세하게 변형된 파일에는 무력하다는 기술적 한계도 상존한다. 따라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사업자들은 필터링 알고리즘의 정교화와 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오식별·오차단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EU DSA가 플랫폼 내부 이의신청 절차, 대체적 분쟁해결(ADR), 국가 감독기구와의 협력 등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나 별도의 준사법적 기

구를 활용해 온라인 콘텐츠 분쟁을 신속·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모델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 표현의 자유 위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일 것이다.

8. 나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디지털 영토를 향해

현재의 이번 결정은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국가와 플랫폼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결정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가 타인의 고통을 소비할 자유, 특히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까지 포괄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적으로 분명히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은 지금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하고, 법은 언제나 그 뒤를 쫓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플랫폼의 공익적 관리 책임’이라는 두 축은, 변동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헌법적 지침으로 기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 기술의 편리함을 누리는 만큼, 그 기술이 만드는 어두운 그늘을 지우기 위한 법적·기술적·사회적 노력을 병행할 때 비로소 안전한 디지털 공동체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헌 결정이 디지털 시대 인권 보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기술 발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디지털 영토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